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의결사항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서 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인의 유전자 시료(試料)를 제공하여 6·25 전사자유해의 신원 확인에 기여한 사람에게 소급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사자와 관련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1. 26. ~ 2020. 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사자의 유가족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전사자와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 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한 유가족에게 최대 1천만원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대통령령 제29672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본인의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본인의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사자의 유가족인 자가 전사자 관련 인적사항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전사자 제적등본, 전사 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 제29672호 6ㆍ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9672호 6ㆍ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본인의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본인의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병영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254